

審 査 報 告 書

2001. 6. 2
의회운영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1. 5. 22.
- 나. 발 의 자 : 신준범 의원외 12인
- 다. 회부일자 : 2001. 5. 24
- 라. 상정일자 : 2001. 6. 2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慎 俊 範 議 員)

가. 改 正 理 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2000. 7. 1)되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사안 중 행정사무감사 사안이 삭제됨으로써 제1차 정례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회기가 줄게되고 반면, 제2차 정례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회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자 등을 상위법 및 관련 조례 등과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조정(안 제4조 제2호).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10월중”으로 조정(안 제4조 제1호).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조정(안 제4조 제2호).
- 제1차 정례회 심의사안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심의 사안으로 조정(안 제5조 제1항, 제2항)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209
번호	

발의년월일 : 2001. 5. 22.

발 의 자 : 신준범의원외12인

1. 改正理由

- 2000. 7.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급번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 본 조례의 일부조항중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상위법 및 관련조례등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감사기능이 삭제됨으로 집회일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중 감사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되어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는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 1일”로 조정함 (조례안 제4조제1호)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10월중”으로 조정함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조정함

-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심의사항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심의사항으로 조정함

3. 參考事項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및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매년 6월 20일에”를 “매년 7월1일에”로 하고 “7월·8월”을 “9월·10월”로 하며, 제2호중 “매년 12월 1일에”를 “매년 11월 25일에”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집회)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 ----- ----- -----</p> <p>1.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p>
<p>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